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75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,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「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[별지1]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06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797)

#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리뉴시스템(이종용), ②주식회사 도심엔지니어링  
종합건축사사무소(김왕선)

나. 전화번호 : ①031-881-2797, ②031-423-4889

2. 명칭 : 폐플라스틱 공중합 기술을 이용한 고점착 방수재와 고순도 구리판막을 일체화한 방수·방근 복합공법 (Eco-GTR System)

#### 3. 내용 요약

<분야>

건축 > 방수 > 복합방수

<기술의 내용>

본 신청기술은 폐플라스틱과 아스팔트 개질재의 중합으로 조성된 고점착성 및 유연성을 지닌 합성 고무계 점착겔과 순도 99.9% 이상의 구리 판막을 통해 식생 뿌리의 생장에 생물학적으로 직접 관여하여 뿌리의 굴화(chemonasty)를 유도함으로써 방근성능을 발현하는 방수·방근 시트재를 일체화한 방수·방근 복합공법이다.

<범위>

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제조된 합성고무계 점착겔과 고순도(99.9%) 구리 판막을 합지하여 일체화 생산된 복층구조의 복합시트재를 활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수·방근 복합공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